

의 정 정 보

2006 - 3 2. 16

I. 중앙기관 정보	1
II.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질의회답내용	5
<부록> : 행복한 책 읽기	10

I. 중앙기관 정보

① 열린우리·민주노동·민주당,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원발의

- 지난 2월 7일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와 관련하여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3당 159명의 의원발의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 지난 1월 4일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국민중심당 4당이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 법안 개정을 합의 한 바 있다.
- 그리고 지난 1월 16일, 23일 2차례에 걸쳐 실무협의를 진행한 결과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 합의안을 만들었다.
- 그 이후 2월 초순에 4당의 공동발의로 법안을 제출하려 했으나 국민중심당이 내부 입장을 정리하지 못해서 2월 7일 오전까지 입장정리를 기다렸다.
- 그러나 국민중심당은 최종적으로 4당 원내대표 회담의 약속을 깨고 공직선거법 개정안,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동참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 2월 7일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이낙연 민주당 원내대표, 천영세 민주노동당 원내대표의 공동대표 발의로, 3당 159명의 의원 공동발의로 법안을 제출했다.

○ 법안 내용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 중앙선관위 산하에 기초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두고 그 명칭, 구역, 의원정수를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이다.
- 하나의 기초의원선거구에서 기초의원을 5인 이상 선출하는 경우 2개 이상의 선거구로 분리할 수 있다고 정했다.
- 그리고 부칙 조항에 이번 5.31 지방선거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3가지가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핵심이다.

② 열린우리·민주노동·민주당, 지방자치법 개정안 의원발의

○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3당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과 함께 지방의회에서 본회의 표결 선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을 의원발의로 지난 2월 7일 국회에 제출했다

○ 발의 개요

- 발의자 : 김한길·이낙연·천영세의원 (3인)
- 찬성자 : 159인

○ 제안 이유

- 지방의회의 안건 표결과 관련하여 입법 미비로 발생되어 온 지방의회의 변칙 운영을 막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보완·개선 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의정문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 지방의회에서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하고,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도록 함
-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 하도록 함

③ 한나라당, 지방의회의원직 무보수 명예직 환원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안 의원발의

- 지난 2월 10일 지방의회의원직 무보수 명예직 환원과 관련하여 한나라당의원 12명의 발의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 발의자 : 박희태·홍문표·안상수·주호성·황우여 의원 등 (12인)
- 제안 이유
 - 종래 무보수 명예직이었던 지방의회의원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활동에 대한 월정수당을 지급하게 되었음
 - 그러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점과 최근의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기초지방의회의원 정당공천제로 인하여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금권정치의 폐단이 우려되는 실정을 감안하여 지방의회의원직을 다시 무보수 명예직으로 환원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한 월정수당 대신 회기 중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회기수당을 지급하도록 함

Ⅱ.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질의회답내용

본 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질의 회답한 내용입니다.

① 경선후보자·예비후보자의 홍보물에 제3자의 추천사 게재

【질 의】

1. 「공직선거법」 제57조의3(당내경선운동)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제작·발송하는 정당의 당내경선후보자 홍보물에 게재할 수 있는 홍보사항의 범위와 관련하여, 당해 정당의 당원으로서 경선운동을 할 수 있는 제3자(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를 제외 함)가 경선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내용을 게재할 수 있는지의 여부
가. 당원만을 대상으로 경선을 하는 경우
나. 당원이 아닌 자에게도 경선 선거권을 주는 경우
2.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제4호에 의거하여 제작·발송하는 예비후보자홍보물에 제3자가 예비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내용을 게재할 수 있는지의 여부
3. 「선거관리규칙」 제27조(선거운동기구의 간판·현판·현수막 등) 제3항은 “(중략)정당 또는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가 자신의 기호를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기호를 게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그렇다면 국회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소속의 예비후보자의 경우에 당내경선이 종료되지 아니한 시점에서도 해당 정당에 일률적으로 부여될 “기호”를 게재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나. 만일 경선이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도 위 “가”처럼 기호 게재가 가능하다면 지역구기초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의 경우 기호가 “○-가, ○-나 등”으로 경선결과에 따라 기호가 바뀔 수 있는데, 이 경우 “기호 ○번”만을 게재할 수 있는지의 여부

다. 경선이 종료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간판·현판·현수막이 아닌 “예비후보자 홍보물과 명함”에도 위 “가·나”의 경우와 같이 기호를 알 수 있는 때에 그 기호를 게재하여도 무방한지의 여부

4.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제1항 제2호는 “(중략)다만, 지하철역구내 기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주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5. 8. 4)>”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05.8.4개정되기 이전의 동 법조문은 “(중략)공개된 장소에서 주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동 장소에서 “지지호소”를 하지 않고 명함을 “주는 행위”는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귀 위원회의 판단과

나. 동 금지장소에서의 명함을 주면서 지지호소를 금지하는 것은 예비후보자에게만 해당되며, 후보자등록을 한 이후에는 동 장소에서의 명함 교부 및 지지호소가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답 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2. 문 2에 대하여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 대신 예비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함)가 지지·추천 내용을 게재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3. 문 3의 가·나·다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4. 문 4의 가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명함만을 주는 행위는 물론 지지호소만을 하는 행위도 할 수 없을 것임.

5. 문 4의 나에 대하여

후보자로 등록하였다 하더라도 후보자등록기간 중에는 할 수 없을 것임.

② 경선후보자·예비후보자의 홍보물에 제3자의 추천사 게재 정당의 일반 선거권자 대상 집회개최 등 관련

【질 문】 한나라당 중앙당 및 시·도당이 「사립학교법」 관련 장외 투쟁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선거법 위반여부가 있는지 조속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중앙당 및 시·도당이 역, 터미널 등 공공장소에서 「사립학교법」 반대 내용의 정당기관지(당보)를 가두 배포할 수 있는가?
- ‘집회장소에서 집회후 가두 배포하는 경우’와 ‘집회없이 가두 배포만 하는 경우’ 모두 답변해 주십시오.
2. 중앙당 및 시·도당이 역, 터미널 등 공공장소에서 「사립학교법」 관련 동영상물(비디오) 및 로고송(CD)을 틀 수 있는가?
- ‘집회장소에서 방송하는 경우’와 ‘집회장소가 아닌 일반 공공 장소에서 방송하는 경우’ 모두 답변해 주십시오.
3. 중앙당 및 시·도당이 「사립학교법」 반대운동의 일환으로 전국적으로(부산 → 서울) ‘1천인 1천km 이어 달리기’ 마라톤 이벤트 개최가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당원 외에 일반인(「사립 학교법」에 반대하는 학부모, 교육자 등) 참여가 가능한가?

【답 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정당의 집회가 허용되는 시기에 정당이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개최하는 집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정당기관지를 배부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집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길거리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배포 하거나, 집회를 개최하더라도 집회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배포하거나, 집회 참석 청중이 해산한 뒤에 배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95조(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금지)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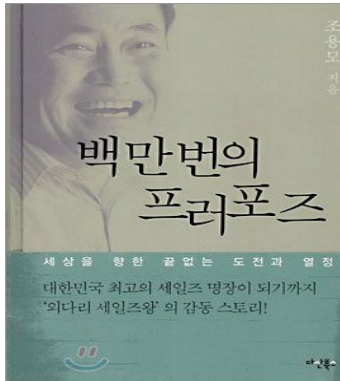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정당의 집회가 허용되는 시기에 정당이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개최하는 집회에서 단순히 「사립학교법」과 관련된 귀 당의 입장을 홍보하는 내용의 동영상물 또는 로고송을 집회 장소에서 방영·방송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이나, 그 밖의 경우에는 행위 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91조(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 또는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

3. 문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행위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41조(당원 집회의 제한)제2항·제254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

<부 록> : 행복한 책 읽기



◎ 도서명 : 백만 번의 프리포즈

◎ 저자명 : 조용모

◎ 출판사 : 다산북스

◎ 출판년 : 2005년

◎ 페이지 : 280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불구하고 검정고시와 고학으로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하고, 5급 사무관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저자는 그야말로 꽃다운 나이인 스물일곱, 뺑소니사고로 한쪽 다리를 쓰지 못하는 장애를 얻었다.

불행은 이처럼 예기치 않은 순간에 찾아온다. 감당할 수 없는 불행을 만났을 때 많은 사람이 그러하듯, 저자도 처음에는 자신의 처지를 인정할 수 없었다. 좌절과 분노, 자기부정, 그리고 자기학대... 방황 끝에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저자의 그 다음 행보는 남달랐다.

세상은 그를 밀어내고 또 밀어냈지만, 그는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서기 위해 도전을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무려 110번이나 원서를 낸 끝에 보험설계사로 제2의 인생을 시작했다.

성한 사람도 하기 힘든 세일즈이지만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와 진실이라는 신념으로 고객에게 성심을 다했다. ‘문전박대’라는 말을 뺏속으로 실감할 만큼 수없이 거절당했지만 단 한 번도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다.

그에게 세일즈는 끊임없이 도전해야 하는 삶의 터전이었으며, 고객은 아무리 번덕을 부려도 사랑해야 하는 단 한 명의 연인이었다. 《백만 번의 프러포즈》라는 책 제목은 이러한 그의 삶을 단적으로 표현해준다.

세상과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진심으로 부딪힐 것, 두려움 없이 도전할 것, 한두 번의 시도로 열리지 않는다면 백만 번이라도 두드릴 것.

이 책은 끝없는 도전과 열정에 대한 다큐멘터리다. 또한 한 세일즈맨의 영업 분투기이며, 장애에 대한 세상의 편견을 뒤엎은 휴먼 스토리이기도 하다. 하지만 어려움을 이겨내고 성공했다는 단순한 성공 스토리로 생각하면 오산이다.

저자 조용모는 가난한 환경을 딛고 고생 끝에 5급 사무관이라는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그러나 순간의 뺑소니사고로 그 모든 것을 잃고 인생의 가장 막바지까지 치달았다.

이렇게 갑작스레 닥친 이 불행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나 대한민국의 세일즈 명장, 최고의 명강사가 되기까지 그는 뼈를 깎는 노력에 노력을 거듭했다. 정점에서 나락으로, 그리고 다시 맨몸으로 일어서

기까지, 그의 삶은 가히 한 편의 드라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다시 일어서기까지 그는 세상과 사람들을 향해 진심이 담긴 프러포즈를 끊임없이 전했다.

세상 모든 일은 하나로 통한다. 삶이나 일이나 모든 것은 사람을 만나면서 이루어진다. 그런 만큼 만나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삶의 질은 엄청나게 달라진다.

사람을 만나는 대표적인 일, 세일즈를 하면서 저자가 진심으로 사람들과 부딪히고 관계를 맺는 모습은 어떤 일을 하고 있든 지금 이 시기 사람들과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시사점을 안겨준다.